

家禮書에 나타난 혼례관 고찰*

The Study on Wedding View in Literatures of the Customary
Proprieties of a Family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崔培英
교수 李吉杓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
Lecturer : Bea-Young Choi
Professor : Kil-Pyo Lee

〈목 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ccomplish the work of finding and recreating factors of everlasting wedding view through studying literatures(「Ka-ryae」·「Ka-ryae-jip-ram」·「Sa-ryae-pyun-ram」) of customary proprieties of a fami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norm and meanings of wedding by way of education appear self-cultivation, sincerity and carefulness, ancestor worship, morality of husband and wife, filial duty to parents and parents-in-law, rank and order, simplicity. From this study on wedding view, the efforts to accomplish the work of finding and recreating the factors everlasting, inheriting value which would not be changed by social changes have to be made from now on.

* 위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I. 서 론

혼례는 개인의 성적·심리적·인격적 성숙의 계기이며, 가정의 시발점이고, 사회적 규범과 신념을 내포한 의례이다. 「禮記」에서 혼례는 禮의 근원이라고 까지 불리워졌으며, 이같은 혼례의 철학적 신념은 儒教를 윤리의 기반으로 삼았던 朝鮮朝 사회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이는 나아가 규범적 성격의 혼례관으로 정립되어, 그 맥이 家禮書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 점에 착안하여 家禮書의 혼례관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두 가지로 제기하는 바이다.

하나는, 혼례문화의 유산인 家禮書 자체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朝鮮朝가 家禮書를 통해 정립된 혼례규법을 제시한 시대였다는 인식 하에 출발한다. 그 대표적 예로 朝鮮朝 관혼상제례의 典據가 되었던 朱子「家禮」는 조선초 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그를 바탕으로 많은 家禮書가 저술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가정학 논문으로서 몇몇 家禮書를 중심으로 생활사적 측면의 혼례를 고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다른 하나는, 사실상 우리는 혼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혼례가 지녔던 본래의 정신적인 의미나 의의를 상실한 채 물질만능주의, 상업주의, 체면주의, 가족이기주의 등에

〈表 1〉 혼례에 대한 선행 조사연구(1980·90년대)

研究者名(年度)	研究題目
김경희(1983)	한국도시가족의 혼인비용지출현황에 관한 연구
김명나(1989)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김모란(1994)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김영주(1994)	Ritual Service Marketing에 관한 연구
서병숙 외(1997)	혼례 관행에 관한 의식조사
손유미(1991)	서울거주주부의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과 의례절식의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유현주(1991)	미혼남성의 결혼의식 및 결혼비용지출에 관한 연구
이기준·조은정(1992)	도시 신혼기기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대한 연구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본 한국인의 의식구조연구
이길표·주영애(1989)	가정경영관과 혼례행례와의 관계연구
이길표 외(1997)	여대생의 혼인준비의식에 관한 연구
이선영(1992)	혼인행사에 관한 의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
이정우·김명나(1997)	도시주부의 혼례행동 및 혼례민족에 관한 연구
이지영(1998)	전통사회 혼인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연구
이행숙(1982)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의식과 혼비지출에 대한 연구
장은영(1990)	도시주부의 혼수관행에 관한 연구
장하경(1996)	한국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0)	혼수에 관한 의식과 실태조사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	결혼비용지출 실태 및 의식조사
정용선 외(1995)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경순(1986)	혼·상·제례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문화연구원(1996)	혼례문화에 관한 서울시민여론조사

휩쓸려 혼례문화가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하나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즉 과소비와 사치 풍조, 혼례허식,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가족간의 갈등, 이혼의 증가 등이 혼례의 병폐로 야기된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계를 비롯하여 몇몇 사회 단체에서는 실태조사(表 1 참조)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바람직한 혼례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급한 것은 올바른 혼례관의 정립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혼례의 구체적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혼례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적 자료마련을 위한 문헌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하에 이 논문에서는 관혼상제례에 관한 문헌 중 오랫동안 기본틀이 되어온 규범적 성격의 「家禮」와 그를 바탕으로 저술된 朝鮮朝金長生의 「家禮輯覽」, 李絳의 「四禮便覽」을 선정하여 이에 담겨있는 혼례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래 규범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의 규칙·기준 또는 양식(배용광, 1984; 9)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道理에 맞도록 살아가게 하는 행위의 지침이다. 따라서 규범적 성격의 家禮書를 통해 혼례관을 고찰함은 사회질서를 유지·통합하고자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도리로서 제시되었던 혼례의 규범적 방향과 지침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는 그것을 그 시대의 理想이라고 단정지울 수도 있겠으나, 그 보다는 家禮書의 저자들이 조명하고자 했던 혼례관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전통적 윤리·규범의 궁정적인 면을 새롭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학문적 자세라고 여겨진다.

이에 이 논문의 목적은 혼례관에 내재된 규범적 지침과 의미를 구명하고 그 의의를 논함으로써 앞으로의 혼례관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家禮書를 중심으로 혼례관을 고찰함에 있어 傳統家庭生活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길표·주영애, 1989; 이영미, 1989; 이길표 외 2인, 1993; 이길표·최배영, 1997; 손홍숙, 1998)의 결과에 의거해 규범적 성격의 혼인준비교육내용이며 동시에 부부의 가정경영관으로서도 의의를 지닌 修身, 精誠과 삼가조심, 祖上崇

拜, 夫婦의 道, 孝親, 位階와 序次, 奢侈排除와 儉素를 혼례관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II. 본 론

1. 家禮書에 나타난 혼례관에 대한 究明

1) 修身

修身은 혼례에 앞서 혼인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관한 것이다. 家禮書에서는 이를 性行의 意味로 언급하고 있다.

「司馬溫公이 말하기를, “대개 혼인을 의논할 때는 마땅히 먼저 그 사위와 며느리의 性行과 그 집안의 法道가 어떠한지를 살펴야지, 구차스럽게 그 富貴를 바라서는 안 된다. 사위가 만약 어질 것 같으면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벼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富貴할지 어찌 알겠는가. 만약에 사위가 시원치 않을 것 같으면 지금 비록 잘 살고 세도있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貧賤해질지 어찌 알겠는가. 아내는 집안의 盛衰가 이에 달렸으므로, 만약 한때의 富貴를 탐내어 장가들었다가는 그 富貴를 떠세하여 남편을 업신여기며 媚父母에 대하여 거드름 떨지않는 이 드무니, 그 교만하고 시새우는 性質을 길렀다가는 뒷날에 걱정거리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비록 아내 친정 財物 덕에 부자되고, 아내 친정 權勢에 의지하여 귀한 벼슬 한들 참된 大丈夫의 기개가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부끄럽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家禮」<昏禮> 譏昏)

즉 혼인을 의논할 때 富貴와 貧賤보다 사위와 며느리가 될 혼인당사자들의 仁의 性行과 집안의 法道 여부를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이르고 있다.

「王氏達이 말하기를, “貴家大族이 부유하더라도 어질지 않으면 福은 이미 사라지고 祸가 이른 것 이므로 그것이 나에게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그(부유하나 어질지 못한 이)와 혼인을 맺는다면 그 福가 미치지 않는 일이 드물 것이다.”라고 하였다.」(「家禮輯覽」<昏禮> 譏昏)

「長子가 멀리 아내를 구할 때는 小姓(보통사람)

을 얻어 자식을 낳게 되면 하늘의 福이다. 그 사람이 뿌리가 있는 芝草나 근원이 있는 단생같은 貴族이 아니더라도, 家法이 있으면 된다.」(「家禮輯覽」〈昏禮〉議昏)

이 또한 혼인당사자들의 仁의 性行과 家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眞氏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비록 안계셔도 어머니가 현숙하다면 딸을 반드시 法道가 있게 가르쳤을 것이니 구애될 바가 없다.”고 하였다.」(「四禮便覽」〈昏禮〉議昏)

혼인을 앞두고 있는 女性의 修身에 있어 어머니의 가르침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에서는 혼인당사자들의 性行에 있어 節(「家禮輯覽」〈昏禮〉議昏; 「四禮便覽」〈昏禮〉議昏)을 함께 지적하여 節概있는 행실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2) 精誠과 삼가조심

두번째 혼례관은 각 혼례절차를 삼가 조심하여 精誠으로 준비해 이행함에 대한 것이다.

「주인은 서신을 갖춘다(주인은 곧 주혼자이다. 서신은 檄紙를 사용하되 世俗의 禮와 같이 한다. 만약 집안 일가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가 서신을 갖추어 宗子에게 아뢴다). 아침 일찍 일어나 祠堂에 이를 받들어 고유한다. …… 이에 子弟를 使者로 삼아 신부집에 보낸다. 신부집 주인이 나와서 使者를 맞이한다(使者는 盛服하고 신부집으로 간다. 신부집 역시 宗子가 주혼자가 된다. 주인은 盛服하고 나와서 使者를 맞이한다.…… 茶를 다 마시면 使者가 致辭하여 말하기를, “당신께서 은혜롭게도 某에게 아내를 주시니 某의 某親 某官이 先人의 禮에 따라 某를 시켜 納采를 청하는 바입니다”라고 한다. 從者가 서신을 가지고 나아오면 使者는 이를 주인에게 전한다. 주인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某의 자식이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도 못하였는데 당신께서 명하시니 某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는 바입니다”하고는 서신을 받

다”하고는 北向再拜한다. 使者는 자리를 피하여 담배하지 않고 물러나기를 청하여 命을 기다려 대기 소로 나온다). 주인은 서신을 받들어 祠堂에 고유한다.……주인이 나와 使者에게 답신을 주고 대접한다(주인이 나와 使者를 맞이하여 堂에 올라 답신을 준다. 使者가 그것을 받고 물러나기를 청하면, 주인이 손님에 대한 禮를 청해 술과 饋品으로 使者에게 禮를 베풀다. 使者는 이에 이르러 비로소 신부집의 주인과 交拜와 指하기를 평상시 賓客의 禮와 같이 한다. 從者에게도 別室에서 禮를 베풀고 모두에게 幣가 주어진다). 使者가 신랑집에 復命하면 주인이 이를 다시 祠堂에 고유한다.」(「家禮」〈昏禮〉納采)

이때 사용하는 納采의 서신과 답신의 書式 및 復書式은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四禮便覽」에는 이 納采 서신을 函에 담고 衣(「四禮便覽」〈昏禮〉納采)로 싸서 가져가도록 이르고 있다.

한편 「家禮輯覽」에는 子弟로 하여금 使者가 되게 하는 이유를 司馬溫公의 「書儀」에 의거하여 밝혀서, 禮를 행함에 삼가 조심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兩家를 왕래하는 사람은 가까운 집 안 사람이 손님으로 보내지게 된다(「家禮輯覽」〈昏禮〉納采)고 하였다.

또한 신부집의 주인이 北向再拜함에 있어 사자가 答拜하지 않는 것은 이 절이 서신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家禮輯覽」〈昏禮〉納采)이라고 「丘儀」를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納采의 절차를 살펴볼 때, 순간마다 삼가 조심하여 禮를 갖추고자 하는 精誠어린 뜻을 발견하게 된다.

「서신을 갖추어 使者로 하여금 신부집에 가게 하고 신부집에서는 서신을 받고 답신을 보내며 손님에게 禮를 표한다. 使者는 復命하되 納采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使者가 致辭하되 采자를 幣자로 고친다. 從者가 서신과 幣를 가지고 나아오면 使者가 이에 서신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吾子께서 선인의 法에 따라 某에게 重한 禮를 주시니 某가 감히 사양하지 못하며, 감히 命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는 서신을 받

아 執事者에게 주고 幣를 받은 후 再拜한다. 使者는 그 자리를 꾀했다가 다시 나아가 命을 청한다. 주인은 답신을 주며, 나머지는 納采 때와 같다.」(「家禮」<昏禮> 納幣)

이러한 納幣시 사용하는 서신과 답신 역시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四禮便覽」에는 신랑집의 使者가 納幣를 행하려 갈 때 두 개의 鏡을 준비하여 하나에는 서신을, 다른 하나에는 幣를 담고 이를 각각 다시 祓(「四禮便覽」<昏禮> 納幣)로 싸서 가져가도록 이르고 있다. 이는 納幣의 서신인 혼서와 陰陽을 象徵(家禮輯覽)<昏禮> 納幣하는 玄纏의 幣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마련되어 신부집으로 보내졌는가를 意味한다.

이렇듯 家禮書에는 納采와 納幣를 준비함에 있어 삼가 조심하여 精誠을 다할 것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納采와 納幣의 서신 및 답신은 정중한 語句로 恭敬의 뜻을 담아 兩家의 主人(주혼자) 혹은 아버지가 쓴다. 둘째, 신랑집의子弟가 兩家를 往來하는 使者의 구실을 담당한다. 셋째, 使者와 兩家의 主人 모두 盛服으로 단정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갖춘다. 넷째, 서신과 幣는 鏡에 담고 그것을 다시 祓로 싸서 精誠스럽게 마련하여 가져간다. 다섯째, 신랑집에서 보낸 使者와 신부집의 主人은 삼가 謙讓의 言行으로 禮를 갖추어 致辭하고 그에 대해 答辭한다. 여섯째, 納采와 納幣 후 신부집의 主人은 交拜와 揖으로써 使者에게 賓客의 禮를 행한다. 일곱째, 使者와 동행하여 신부집에 온 從者에게도 그 노고에 대해 答禮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3) 祖上崇拜

祖上崇拜는 돌아가신 祖上님께 謹敬을 다하는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서신)를 받들어 祠堂에 고유한다. 冠禮시에 고하는 것과 같이 하되 祝版에 쓰기를 ‘某의 아들 某(혹은 某親 某의 아들 某)가 나이 이미 長成했으나 배필이 없더니 某官 某郡 姓名의 딸과 혼인하기로 이미 의논되어 오늘 納采를

행합니다. 感愴하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라고 한다.」(「家禮」<昏禮> 納采)

「서신을 받들어 祠堂에 고유한다. 신랑집의 儀式과 같이 하되 祝版에 ‘某의 몇째 딸(혹은 某親 某의 몇째 딸)이 나이 점차 長成하여 이미 某官 某郡 姓名의 아들에게 출가하기로 허락하여 오늘 納采를 행합니다. 感愴하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라고 한다.」(「家禮」<昏禮> 納采)

「使者가 신랑집에 復命하게 되면 주인은 다시 이를 祠堂에 고유한다.」(「家禮」<昏禮> 納采)

이는 納采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精誠을 다해 祖上께 告由하는 兩家의 恭敬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納幣의 경우 「家禮」와 「四禮便覽」에는 告于祠堂의 節次가 생략된 반면 「家禮輯覽」에는 「儀禮」에 나타난 納徵을例로 제시하여 先人的 禮가 있으므로 納幣를 행할 때도 반드시 祠堂에 고유해야 한다고 이르고 있다.(「家禮輯覽」<昏禮> 納幣) 이는 金長生이 禮學者로서 혼례의 규범적인 지침을 얼마나 깊이있게 연구했는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하겠다.

「주인은 祠堂에 고유한다. 納采의 儀式과 같이 하되 ‘某의 아들 某(혹은 某親 某의 아들 某)가 장차 오늘 某官 某郡 某氏를 親迎하게 되어 感愴하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라고 한다.」(「家禮」<昏禮> 親迎)

「주인은 祠堂에 고유한다. 納采의 儀式과 같이 하되 ‘某의 몇째 딸(혹은 某親 某의 몇째 딸)이 장차 오늘 某官 某郡 姓名에게 시집가게 되어 感愴하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라고 한다.」(「家禮」<昏禮> 親迎)

이로 보아 兩家 모두 祖上님께 告由함을 親迎을 행하는 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일째에 주인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祠堂에 謁見한다. 옛날 사람은 3個月후에 廟見을 행했으나 지금은 이것이 너무 멀다하여 3일로 바뀌었다.……고하기를 ‘아들 某의 아내 某氏가 감히 뵙습니다’라고 한다.」(「家禮」<昏禮> 廟見)

이에 「家禮輯覽」은 「儀禮」〈土昏禮〉를 인용하여 만일 시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신부가 3個月 후에 廟見을 행하여 菜를 올리는 것이라고 이르고 있다. 여기서 3個月이라는 시점이 쓰인 것에 대해 설명하기를 天氣가 변하여 婦道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語類」를 통해 부연하기를 3個月이 되어야 後事가 정해지는 까닭에 이때에 이르러서야 일에 변경됨이 없이 신부가 그 위치를 定하게 되므로 반드시 3個月 후에 廟見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金長生은 〈士昏禮〉를 인용하여 廟見시에 쓰이는 菜는 筐에 담은 祭菜로서 董을 가리킨다고 하고, 그 董은 音이 謹과 같다고 하여 '삼간다'는 意味가 내재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鄭氏의 견해를 통해 菜로서 董을 사용하는 것은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粟과 段脩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菜筐와 더불어 栗과 段을 담은 箕도 마련하게 되는데 廟見하는 날 신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엄숙하게 栗과 段을 가지런히 함으로써 삼가 恭敬을 표하게 된다(「家禮輯覽」〈昏禮〉廟見)고 그 意味를 밝히고 있다. 「四禮便覽」에도 역시 〈士昏禮〉에 나타난 廟見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으나 「家禮輯覽」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奠菜시에 董이 없다면 芹으로 대신할 수 있다(「四禮便覽」〈昏禮〉廟見)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家禮」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에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의 부모님을 찾아 뵙는 增見婦之父母 시에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祠堂에 가서 '某의 사위 某가 와서 뵙습니다'라고 고유하는 것(「家禮輯覽」〈昏禮〉增見婦之父母)임을 「丘儀」를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4) 夫婦의 道

夫婦의 道는 남편과 아내로서 지녀야 할 바른 道理에 관한 것이다. 이를 혼례식인 親迎의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酒禮

「아버지가 아들에게 命하여 말하기를 "가서 네 아내를 맞이하여 우리 宗事を 잇되 공경함으로써 힘써 인솔해나가야 한다. 그런즉 常道를 지나게 될 것이다." 아들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나 어찌 명하심을 잊겠습니까"라고 한다.」(「家禮」〈昏禮〉親迎)

이는 남편의 구실이 아내와의 恭敬으로써 常道를 지켜나가는 것임을 이르고 있다.

「胡安定이 말하기를 "딸을 시집보낼 때는 반드시 내 집 보다 나은 집에 보내야 하니, 내 집 보다 나은 집이라면, 딸이 남편 모시기를 반드시 恭敬스럽게 하고 조심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四禮便覽」〈昏禮〉議昏)

즉 아내의 경우에도 역시 남편과의 恭敬으로부터 그 맡은 바 구실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墓鳳禮

「무릇 賛는 生鳳을 사용하고 …… 없으면 나무로 깎은 것으로 한다. 그것은 陰이 陽을 妾아 往來한다는 뜻에 따른 것이다. 程子가 말하기를 "기려기는 (한번 짹을 맷으면) 다른 짹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家禮」〈昏禮〉親迎)

「司馬溫公이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인솔하고 여자가 남자를 따름은 夫는 剛하고 婦는 柔하다는 뜻이 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家禮」〈昏禮〉親迎)

「家禮輯覽」도 「家禮」의 順陰陽往來를 註釋하여 夫는 陽이고 婦는 陰이니 전안례에 기려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뜻에 따르는 意味(「家禮輯覽」〈昏禮〉親迎)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부부 사이의 剛·柔관계의 화합을 합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交拜禮

「신부의 從者가 신랑의 자리를 동쪽에 펴고, 신랑의 從者가 신부의 자리를 서쪽에 편다. 신랑이 남쪽에서 손을 씻으면 신부의 從者가 물을 따라주고 수건을 바치며, 신부가 북쪽에서 손을 씻으면 신랑의 從者가 물을 따라주고 수건을 바친다. 신랑이 신부에게 握하고 자리로 나아가면 신부가 절하고 신랑이 答拜한다.」(「家禮」〈昏禮〉親迎)

「司馬溫公이 말하기를, "신랑이 남쪽에서 손을

씻을 때 신부의 從者가 물을 따라주고, 신부가 북쪽에서 손을 씻을 때 신랑의 從者가 물을 따라주는 것은 夫婦의 接情이 시작되는 것이라 廉恥가 있게 되는 것으로 從者가 그 뜻을 交導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家禮」<昏禮> 親迎)

여기서 손을 씻고 교배례를 행함은 禮義廉恥를 갖춘 부부의 道가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다.

○ 合卺禮

「신랑이 신부에게 拱하고 자리로 나아감에,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앉는다. 從者가 술을 따르고 飴을 마련하면 신랑과 신부가 술을 지운 다음 마시고 안주를 먹는다. 또 술을 따라 신랑이 신부에게 拱하고 들어서 마시되 지우지 않고 안주도 먹지 않는다. 또 신랑과 신부 앞에 나누어 놓은 졸(표주박잔)에 술을 따라 신랑이 신부에게 拱하고 들어서 마시되 지우지도 않고 안주도 먹지 않는다.」(「家禮」<昏禮> 親迎)

「劉章이 말하기를, “『儀禮』에 졸이라는 것은 宰瓢이니 한 개의 瓢를 나누어 둘이 되게 한 것이라고 한다. 瓢를 일컬어 졸이라 하니 신랑과 신부가 술을 마시는데 각기 하나씩을 들게 된다. 그러므로 合卺하여 술을 마신다고 말한다”고 하였다.」(「家禮」<昏禮> 親迎)

「四禮便覽」에도 역시 세번째 잔으로 쓰이는 졸은 들로 나누어놓은 酒杯(「四禮便覽」<昏禮> 親迎)를 意味한다고 되어 있으며, 「家禮輯覽」에는 이것이 夫婦 사이의 和合(「家禮輯覽」<昏禮> 親迎)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昏義」에 말하기를 “신부가 이르러 신랑이 신부에게 拱하고 들어가 共牢하여 먹고 合卺하여 술을 마시는 것은 소위 合体로써 尊卑가 같아져서 親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고 하였다.」(「家禮」<昏禮> 親迎)

여기서 共牢와 合卺은 부부의 尊卑가 같아져 合体함을 意味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家禮輯覽」에서는 「禮記」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特牲에 이르기를 “남편이 높으면 아내 역시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내 역시 낮다. 그러므로 尊卑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家禮輯覽」<昏禮> 親迎)

이상 家禮書에서는 남편은 剛하되 공경으로 아내를 인솔해야 하고, 아내는 柔하되 역시 공경으로 남편의 뜻에 따라 화합함으로써 家系를 계승하고 宗事를 이끌어나가 이를 항상 부부의 道로 삼을 것을 이르고 있다.

5) 孝親

다섯번째 혼례관은 孝親에 대한 것으로 이는 부부가 살아계신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愛敬의 孝를 행함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명하기를 “공경하며 조심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 시부모님의 명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신부의 어머니는 이르기를 “힘쓰고 공경하여 아침부터 밤 늦도록 너의 규문지례(여자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하며, 여려 백숙모·고모·울케·동생들은 말하기를 “네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여 받들어 아침부터 밤 늦도록 허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家禮」<昏禮> 親迎)

이렇듯 부모님을 비롯한 여러 친속들로부터 媚家에 대한 恭敬의 訓戒를 듣는 신부는 앞으로의 생활 속에서 더욱 孝親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할 것임을 이르고 있다.

「신부는 일찍 일어나 盛服을 하고 (시부모님) 뵙기를 기다린다. 시부모는 堂 위에 東西로 마주 앉아 각기 그 앞에 탁자를 놓는다. …… 신부가 나아가 階階 아래에 자리하여 북향해서 시아버지께 절을 하고는 올라가 탁자 위에 賢幣를 드린다. 시아버지지는 그것을 어루만진다. 侍者が 이를 들여가면 신부는 내려와 다시 절한다. 西階 아래로 가서 북향하여 시어머니께 절하고 올라가서 賢幣를 드린다. 시어머니가 이를 들어 侍者에게 주면 신부는 내려가 다시 절한다. 만일 宗子의 아들이 아니고 宗

子와 同居하면 시부모님의 私室에서 이 禮를 先行하고, 宗子와 同居하지 않으면 위의 의식대로 행한다. 시부모가 신부에게 禮를 폄고 나서 신부가 尊長을 폄는다. 신부가 이미 禮를 받았으므로 西階로 내려와, 시부모보다 尊長이신 분이 동거하고 계시면 시부모가 신부를 데리고 그 室(방)로 가서 시부모님을 폄던 禮와 같이 행한다.」(「家禮」<昏禮>婦見舅姑)

이에 婦見舅姑시 사용되는 贊에 대해 「家禮輯覽」에서는 「禮記」<曲禮>를例로 들어 다음과 같이 상세히 밝히고 있다.

「<曲禮>에 신부의 磬(폐백)는 楪·棅·脯·脩·棗·栗이라고 한다. 磬은 贊와 같은 의미인데 이로써 相見의 禮를 이루게 된다. 楪(호깨나무 열매)는 그 형태가 珊瑚와 유사하며 그 맛이 달고 아름다워 일명 石李라고 하며, 棅(개암)은 栗(밤)과 비슷하게 작고, 脯는 지금의 肺이고, 儀는 고기를 두드려 豆과 桂를 넣어 말린 것이다. 말린 脯의 형태는 네모 반듯하고 儀의 형태는 좁고 길다. 이상의 것과 棗·栗의 6가지 물건이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뵈울 때 磬로 사용된다.」(「家禮輯覽」<昏禮>婦見舅姑)

이와 더불어 金長生은 여러 文獻을 통해 다시 贊를 설명하고 있다. 즉 「左傳」에는 棅·栗·棗·脩, 「儀禮」<士昏禮>에는 시아버지께 드리는 棗栗과 시어머니께 드리는 殷脩(「家禮輯覽」<昏禮>婦見舅姑)가 언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贊은 筍에 담는데 이것은 竹器로서 겉은 細色, 안은 紡色이고 다리가 있는 것(「家禮輯覽」<昏禮>婦見舅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四禮便覽」에는 尤庵 宋時烈의 말을 인용하여 古禮에는 見舅姑시에 贊가 사용되었고, 「家禮」에는 贊와 鑄가 兼用되어 있으며, 世俗에서는 贊가 사용된다(「四禮便覽」<昏禮>婦見舅姑)고 하였다. 따라서 古禮인 「儀禮」<士昏禮>에 의거하여 시아버지께 棗栗을 드리고, 시어머니께 殷脩를 드리게 되면 筍은 2개를 갖추어야 하고, 만일 鑄도 드린다면 별도로 2개의 盤을 더 준비해야(「四禮便覽」<昏禮>婦見

舅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見舅姑禮는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폄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부집은 贊 혹은 鑄로써 신랑집에 대해 精誠과 敬意를 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부집에서는 만일 婦見舅姑에 사용될 贊或 鑄를 마련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精誠껏 준비하고 筍 혹은 盤에 담아 紵(「四禮便覽」<昏禮>親迎)로 싸서 가져가도록 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을 시부모님께 드리는 신부도 먼저 마음과 몸을 정결히 하기 위해 손을 씻음(「四禮便覽」<昏禮>婦見舅姑)으로써 시부모님에 대한 愛敬의 孝를 나타내 보였을 것이다. 또한 「四禮便覽」은 婦見于諸尊長시 시부모보다 존장되는 이를 신랑의 祖父母(「四禮便覽」<昏禮>婦見舅姑)로 언급하는 尤庵의 견해에 따라 신부가 시조부모님을 폄 때는 그분들이 계신 室(방)로 가서 시부모님을 뵈었을 때의 禮와 같이 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부집에서는 신부의 시부모님께 드릴 棗栗·殷脩 그리고 시조부모님께 드리게 될 棗栗·殷脩를 준비함으로써 모두 2벌의 贊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만약 家婦이면 시부모를 供饋한다. 이 날 食時에 신부집에서는 饋과 酒壺을 갖추어 (보내고) 신부의 從者는 堂 위의 시부모 자리 앞卓子에 疏果를 차린다. 隅階의 동남쪽에는 盡盆을, 동쪽에는 幀架(손수를 수건걸이)를 마련한다. 시부모가 자리에 나오시면 신부는 손을 씻고 西階로 올라 盞에 술을 따라 시아버지의 탁자 위에 드리고는 내려와 시아버지께서 드시기를 기다려 절한다. 시어머니께서 나아가 술을 드리고 시어머니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면 신부가 내려가 절한다. 그리고나서 饋을 받들어 시부모님 앞에 드리고 시어머니의 뒤에서 시중하고 서서 (음식 드시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음식을 다 드시면 飯을 치우고 侍者가 饋을 別室에 나누어 놓는다.…… 만일 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私室에서 이 의식을 행한다.」(「家禮」<昏禮>婦見舅姑)

여기서 家婦란 長婦·適婦 즉 맘여느리를 의미한다. 「家禮輯覽」에서는 「儀禮」<士昏禮>를 인용하여

맏며느리가 된 신부가 供饋하는 것의 意味를 孝道와 奉養으로써 婦道를 이루는 것(「家禮輯覽」〈昏禮〉婦見舅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饋에 대해 부연하기를 「家禮」에서는 飯·疏·果와 肉(特豚)(「家禮」〈昏禮〉婦見舅姑), 「家禮輯覽」에서는 飯 혹은 饺頭(「家禮輯覽」〈昏禮〉婦見舅姑) 「四禮便覽」에서는 湯·飯·果·疏·肉·魚(「四禮便覽」〈昏禮〉婦見舅姑)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아 신부가 家婦 즉 가계를 계승할 맏며느리이면 饋品의 多少 보다는 그 精誠됨을 중시하여 시부모를 供饋하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庶婦들 보다 供養의 孝를 한층 더 강조한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날 신랑이 신부의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신부의 아버지는 迎送하고 捷讓하는 것을 客禮와 같이 하여 (신랑이) 절하면 무릎을 끊는다. (신랑이) 그를 부축하여 일어나시도록 한다. (신랑이) 들어가 신부의 어머니를 뵙게 되면 신부의 어머니는 문의 원편을 닫고 문 안에 서고, 신랑은 문 밖에서 절을 한다. 두분 모두에게 幣를 드린다. …… 다음으로 신부 집안의 여러 친속들을 뵙되 幣는 쓰지 않는다. 신부집에서는 신랑에 대한 대접을 평상시의 儀式대로 한다.」(「家禮」〈昏禮〉婿見婦之父母)

「家禮輯覽」에서는 〈土昏禮〉를 통해 신랑이 신부의 부모님께 賛를 드리는 것은 寢에서 행해지게 된다고 이르고 있다. 이는 그가 자식의 도리로서 행하는 것 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鑿를 드려 相見하는 것은 親으로서 父子의 道(「家禮輯覽」〈昏禮〉婿見婦之父母)를 행함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한편 「家禮」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부모님을 뵙게 될 때 幣를 드린다고 한 데 반해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에서는 「儀禮」와 「儀節」의 경우를例로 들어 「儀禮」에는 웃어른에게 尊敬을 표하는 意味에서 賛(「家禮輯覽」〈昏禮〉婿見婦之父母)를 드리는 것으로, 「儀節」에는 賛와 幣 모두를 드리는 것(「四禮便覽」〈昏禮〉婿見婦之父母)으로 밝히고 있다.

6) 位階와 序次

位階와 序次의 혼례관은 혼례라는 것이 家庭을 이

루는 시발점이므로 家庭에서 웃어른과 아랫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道理에 대한 지침이다.

첫째, 집안의 웃어른인 宗子에 대한 아랫사람으로서의 道理이다.

「(신랑집의) 주인은 서신을 갖춘다. 주인은 곧 주 혼자이다. 서신은 牘紙를 사용하되 世俗의 禮와 같이 한다. 만약 집안 일가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가 서신을 갖추어 宗子에게 아뢴다.……신부집 역시 宗子가 주혼자가 된다. 주인은 盛服하고 나와서 使者를 맞이한다. 宗子의 딸이 아니면 그 아버지는 주인의 오른쪽에 자리하여 항렬이 높으면 약간 나아가고 낮으면 약간 물러선다.」(「家禮」〈昏禮〉納采)

만약 宗子의 아들이나 딸의 혼례가 아닌 경우에, 신랑의 아버지는 納采를 행하게 됨을 宗子에게 아뢴으로써,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는 이 納采 서신을 받음에 있어 宗子와 함께 자리는 하되 삼가 항렬을 지켜 위치를 정함으로써 宗子에 대한 禮를 갖추도록 이르고 있다.

「만일 宗子의 아들이 아니면 宗子는 祠堂에 고유하고 그 아버지(신랑의 아버지)가 私室에서 의식을 행하되, 다만 宗事라는 말을 家事로 고치도록 한다.……만일 宗子의 딸이 아니면 宗子는 祠堂에 고유하고 그 아버지(신부의 아버지)가 私室에서 酔禮 한다.」(「家禮」〈昏禮〉親迎)

이러한 親迎의 節次에 있어서도 祠堂에 고유하는 것은 宗子의 구실로, 私室에서 혼인당사자들을 酔禮하는 것은 그 父의 맡은바 구실로 분리되어, 宗家の 웃어른과 집안 일가의 아랫사람간의 位階秩序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만일 신부의 아버지가 宗子가 아니면 먼저 宗子의 夫婦를 뵙되 幣는 드리지 않고 위의 의식(신부의 부모를 뵙는 의식)과 같이 한 후 신부의 부모님을 뵙는다.」(「家禮」〈昏禮〉婿見婦之父母)

이에 신랑이 신부의 부모님을 뵙고자 해서 왔을

때, 먼저 宗子 夫婦를 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는 家庭의 規範의인 모습 속에서, 宗法思想의 일면을 재발견하게 된다.

둘째, 父母세대에서 子女세대로 이어지는 位階가 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禮를 편다. 부모가 딸을 酬禮하는 의식과 같이 행한다. …… 시부모가 신부에게 음식을 베푼다. 신부의 의식(시부모님을 공궤 하던 의식)대로 한다. 禮를 마치면 시부모가 먼저 西階로 내려가고 신부는 阼階로 내려간다.」(「家禮」<昏禮> 婦見舅姑)

「家禮輯覽」에서는 「儀禮」<士昏禮>를 인용하여 시부모가 신부에게 禮를 편으로써 婦道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親이 두터워진다(「家禮輯覽」<昏禮> 婦見舅姑)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家禮」의 婦降自阼階를 「禮記」<昏義>를 통해 주석하기를 代를 잇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르고 있다. 즉 阼階는 주인의 계단이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代를 이어 바깥 주인이 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代를 이어 장차 안주인이 됨(「家禮輯覽」<昏禮> 婦見舅姑)을意味한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친속들간의 序次에 관한 것이다.

「신부는 여러 尊長을 뵙되 冠禮 때와 같이 두 서열로 하여 신부가 尊長들께 두루 절한다. 賢는 드리지 않는다. 시동생이나 시누이들은 모두 (신부와) 맞절한다.」(「家禮」<昏禮> 婦見舅姑)

여기서는 신부가 신랑의 집안내 친속들을 처음 뵙게 될 때 그 序次에 따라 禮를 갖추는 것을 道理로서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관해 「家禮輯覽」에서는 長屬은 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신부가 절을 하고, 幼屬은 맞절하는 대상이므로 신부가 원편에 거하고 아랫사람은 오른편에 있어 答拜해야 한다고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신부가 長·幼의 관계됨을 알 수 있도록 일일이 일러주어야 하며, 만약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친속의 어른이 그것을 대신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한편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은 長屬이 비록 많아도 함께 一列로 절을

받는 것에 대해 司馬溫公의 「書儀」를 인용하여 그것이 簡便함을 따르는 것(「家禮輯覽」<昏禮> 婦見舅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간편함에 따른다고 해도 웃어른과 아랫사람을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맞게 禮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추된다.

7) 奢侈排除와 儉素

奢侈排除와 儉素의 혼례관은 혼례를 행함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사치를 금하며 검소할 것에 대한 指針이다.

「司馬溫公이 말하기를, “文中子는 혼인하는데 財物을 따지는 것은 오랑캐의 짓이다. 무릇 혼인은 서로 좋아하는 姓이 다른 두 사람이 어울려서,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에 자손을 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家禮」<昏禮> 親迎)

즉 혼인의 진정한 意義를 밝히면서 더불어 혼인에 財物을 논하는 것은 금해야 할 바임을 일러주고 있다. 한편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에는 혼례시 奢侈를排除하고 儉素해야 할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특히 「四禮便覽」에는 혼례절차에 따라 갖추어야 할 諸具들을 제시함으로써 검소한 혼례를 실천하는 데 이해를 돋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表 2>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議昏에서부터 增見婦之父母에 이르는 모든 혼례절차 속에 사치를 금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儉素해야 할 것이 언급되어 있다. 이에 세 家禮書에 제시되어 있는 奢侈排除와 儉素의 혼례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家禮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혼례에 財物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매우 경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家禮」는 사치배제와 검소에 관한 몇몇 규범적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나, 「家禮輯覽」은 「家禮」는 물론 중국 및 우리나라의 문헌에 나타난 禮說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지침과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四禮便覽」은 많은 禮說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바를 선정하여 혼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모든 혼례절차 上에서 자신의 형편

〈表 2〉 혼례절차에 나타난 奢侈排除와 儉素의 혼례관

서명 혼례 절차	「家禮輯覽」	「四禮便覽」
議 昏	-家禮에 이르기를 혼인을 의논할 시 富貴를 사모하는 것은 구차함.	-家禮에 이르기를 文中子는 혼인에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짓이라고 함.
納 采	-丘儀에 남채서신을 전하기 위해 온 손님에게 禮를 베푸는 것은 3·5잔의 酒, 3·5가지의 饪, 그리고 幣로써 함.	-신랑집에서 온 使者와 從者에게 酒饌과 幣를 베풀에 있어 형편에 따름.
納 幣	-士昏禮에 納幣시 玄纏 東席은 10端으로 제한함. 玄纏은 陰陽이 갖추어지는 것을 상징함. -禮記에 納幣의 皮帛은 제한을 두고 誠과 信의 뜻을 위주로 해야 함. -五禮儀에 紹 혹은 布를 幣로 쓸때는 2품이상은 玄 3· 纏 2로, 3품 이하 庶人은 玄 纏 각 1로 함.	-士昏禮에 신부집으로 보내는 色繪의 幣는 玄纏을 사용함. 幣는 貧富의 형편에 따름. -家禮本註에 두끌(1兩)으로 하되 10端(5兩)이 넘지 않게 함. -신랑집에서 온 使者와 從者에게 酒饌과 幣를 베풀에 있어 형편에 따름.
親 迎	-五禮儀에 신랑의 盛服은 관직이 있는 사람은 公服, 文武兩班의 子孫과 生員은 紗帽·角帶, 庶人은 笠子·條兒을 착용하도록 함. 만일 紗帽·角帶를 마련치 못하면 笠子·條兒도 가함. 모든 의복은 純綿 혹은 木綿으로 만들. -五禮儀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갈 때 쓰는 炬는 2품이상은 10자루, 3품이하는 6자루로 함. -士昏禮에 신부의 盛飾은 純衣纏衿으로 착용함. -家禮에 奠膺시 기러기가 없으면 나무로 깎아서 씀.	-신부집에서 신랑이 거할 室에 마련해두는 衣服은 형편에 따름. -신랑의 盛服은 紗帽·團領·品帶·黑靴를 착용함. 國俗에도 이처럼 마련됨. -신부의 盛飾은 冠·祫衣·帶·帔·裙·衫子로 함. -家禮本註에 奠膺시 기러기가 없으면 나무로 깎아서 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갈 때 쓰는 燭籠은 4개 혹은 2개로 하고 炬를 쓰기도 함. -신부가 신랑집으로 갈 때 쓰는 燭籠은 4개로 하고 世俗에서는 炬를 쓰기도 함. -신부집에서 온 從者에게 베푸는 饪과 幣는 형편에 따름.
婦見舅姑	-五禮儀에 婦見舅姑시 囊粟이 없으면 時果를, 膏脩가 없으면 乾肉를 사용하도록 함. -丘儀에 饋于舅姑시 신부는 시부모님께 飯 혹은 饅頭를 올림.	-士昏禮에 시부모님께 신부가 드리는 囊粟과 膏脩로 함. -尤庵이 말하기를 혹 시부모님께 幣를 드린다 해도 반드시 布帛이 아니어도 되며 紙束도 가능. -饋于舅姑에 신부가 시부모님을 供饋할 때 盛饋은 酒·湯·飯·果·蔬·肉·魚類로 하되 다소는 형편에 따름. -儀節에 舅姑饋之時 시부모가 신부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은 湯·飯으로 하되 형편에 따름.
廟 見	-士昏禮에 만일 舅姑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菜·栗·膏을 마련하여 올림. 菜로는 董을 씀. 이는 恭敬의 뜻을 지님.	-士昏禮에 菜로는 董을 씀. -만일 董이 없으면 芹으로 대신해도 됨.
婿見婦之父母	-儀禮에 신랑이 신부의 부모님께 드리는 饋는 겨울에는 雉, 여름에는 鷄로 하도록 함. 여름에 雉를 말린 鷄를 쓰는 것은 상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	-신랑이 신부의 부모님께 드리는 幣는 형편에 따름.

에 맞게 奢侈를 금하고 儉素하게 갖추도록 한 것은 饋品과 賛幣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賛·幣는 둘다 ‘폐백’의 意味로 해석될 수 있으나 賛는 粧·栗·殷·脩·雉(臍)와 같은 음식폐백으로, 銀는 布·帛과 같은 옷감폐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 불어 賛나 銀를 마련함에 그多少 보다는 그것에 담겨있는 誠과 信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하게 일깨우고 있다.

2. 혼례절차에 따른 혼례관의 의의

家禮書의 고찰을 통해究明된 혼례관의 의의를 논하기 위해 다음 <表 3>와 같이 혼례절차에 따른 혼례관을 제시하였다. <表 3>을 보면 親迎·壻見婦之父母가 7가지의 혼례관 중 5가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納采·婦見舅姑가 4가지, 議昏·廟見이 3가지, 納幣가 2가지의 혼례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혼례절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家禮書에 나타난 議昏은 혼례에 앞서 혼인당사자와 그家庭이 갖추어야 할 바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혼례관은 修身, 夫婦의 道, 奢侈排除와 儉素였다. 이에 家庭의 올바른 法道하에 성장한男女가 혼인을 하기 전 무엇보다 仁과 節의 性行을 갖추도록 언급되었다. 또한 혼인에 富貴와 貧賤을 논하기 보다는 혼인당사자들이 修身으로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혼인을 행함에 사치를 배제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議昏 節次를 논의함에 있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規範的 意味를 도외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고찰한 의혼은 혼인당사자들이 어떠한 家庭의 法道 하에서 성장했는가, 그리고 혼례에 앞서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졌는가를 논하는 것이었다. 이는 과거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혼인전 부모로부터 받았던 교육이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 형성에 토대가 되어 혼인후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배우자 선정조건에 성격, 가치관 및 역할기대

의 일치 등이 높게 지적(서병숙 외, 1997; 22)되고 있는 바에 의거해볼 때 議昏이 지녔던 내면적 의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요구된다.

2) 納采는 兩家 사이에 議昏이 이루어진 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인을 청하는 서신을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節次로 이와 관련된 혼례관은 精誠과 삼가조심, 祖上崇拜, 位階와 序次, 奢侈排除와 儉素로 나타났다. 즉 정중한 語句로 精誠의 뜻을 담아 쓴 納采 서신을 가지고 신랑의 아버지는 집안의 어른인 宗子(주혼자)에게 남채를 행하게 됨을 아뢰며 宗子는 이를 받들어 祠堂에 告由한 뒤 弟子로 하여금 兩家를 王래하는 使者로 삼아, 신부집에 가도록 하였다. 한편 신부집의 宗子(주혼자)는 손님으로 온 使者를 삼가 禮를 갖추어 맞이한 뒤 納采 서신을 받게 됨을 祠堂에 告由하고는 使者에게 답신을 주고 賓客의 禮를 베풀되, 사치함이 없이 형편에 맞게 酒饌과 銀를 마련하였다. 納采의 절차는 現代의 약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그 예식의 실태와 비용이 혼례의 商業化와 規格化(이정우·김명나, 1997; 13)를 유발시킨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약혼식의 상업화와 규격화로 인해 야기되는 過消費와 自己誇示性向 등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精誠과 삼가 조심 그리고 敬으로 兩家가 相互尊重(이길표·최배영, 1998; 85)에 價値를 두었던 納采의 본래 意義를 재인식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納幣는 혼인이 이루어진 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서인 서신과 폐백인 채단을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그것을 받고 답신을 보내는 절차로, 이와 관련된 혼례관은 精誠과 삼가조심, 奢侈排除와 儉素로 나타났다. 신랑집에서는 恭敬의 뜻을 담아 정중하게 쓴 서신을 纂에 넣어 紋로 싸고, 陰陽을 象徵하는 玄纏의 銀는 형편껏 마련하여 纂에 넣고 역시 紋으로 싸서 使者로 하여금 禮를 갖추어 가져가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納幣의 서신인 혼서가 당시로서는 혼인의 유일한 증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纂 속에는 오늘날과 같이 문제시되고 있는 지나칠 정도의 값진 禮物과 옷감이 아닌 陰陽을 象徵하는 玄纏의 채단만이 들어있었던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또한 ‘함들이기’라는 名目 하에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집으로 함을 지고 가 함값을 홍정하는 痘弊(이길표, 1995; 10)가 대두되고 있는 이때, 과거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신부집에 使者를 보냈던 바를 생각한다면, 兩者는 엄격히 다른 차원의 意味라고 하겠다. 따라서 納幣의 절차를 긍정적인 혼례문화의 일환으로서 계속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하는 진정한 意義는 誠과 信을 위주로 하여 혼인의 證書인 혼서를 전하는데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4) 親迎은 오늘날의 혼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를 酒禮한 후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기러기를 전하는 奠鳳禮를 행하고, 신부를 친히 맞이하여 신랑집으로 돌아와 交拜禮와 合巹禮를 행하는 절차이다. 이와 관련된 혼례관은 祖上崇拜, 夫婦의 道, 孝親, 位階와 序次 그리고 奢侈排除와 儉素에 관한 것이었다. 즉 兩家 모두 혼례를 행하는 오늘의 기쁜 일을 조상께 告由하고, 부모와 친속들은 혼인당사자들에게 남편과 아내로서 지녀야 할 바른 도리를 일깨워주어, 남편은 剛하되 恭敬으로 아내를 인솔하며 아내는 柔하되 역시 공경으로 남편과 和合함으로써 家系를 繼承하고 祖上과 父母에 대한 孝를 다하도록 언급하였다. 또한 혼례식에 소요되는 衣服이나 物品은 자칫 奢侈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자신들이 처한 형편에 따라 儉素하게 마련하도록 지적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親迎節次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혼례의 規範의 指針과 意味를 재발견하게 된다.

① 親迎에는 夫婦가 될 두사람이 남편과 아내로서 지녀야 하는 도리를 맹세하는 三誓의 절차가 내재되어 있다. 첫째는 酒子禮와 酒女禮를 행함으로써 혼인당사자들이 祖上과 父母께 드리는 맹세이며, 둘째는 신랑과 신부가 合巹禮의 첫 잔을 祭酒(고수례)함으로써 天地神明께 드리는 맹세이고, 셋째는 술을 마시고 同牢하여 음식을 먹음으로써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행하는 맹세이다. 이는 최근 예식장이나 호텔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그저 서있는 것으로만 보일 정도로 혼례식을 획일적으로 치루고(손승영, 1996; 80-81) 있는 이들에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롭게 하는 意味 있는

지침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혼례의 형식은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두사람이 夫婦가 됨에 서로가 恭敬하고 和合하여 원만한 家庭을 이루어나갈 것을 맹세하는 精神的인 價值가 내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② 우리가 그동안 전통사회 부부관계의 대명사로 보아왔던 男尊女卑의 관념을 해석함에 자칫 오류에 빠졌던 것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家禮書에서 부부는 곧 동등한 인격체로 언급되었고, 부부의 상호관계는 隱陽과 剛柔의 相配와 같아서 일방에게 차등적 종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남편이 높으면 아내 역시 높고, 남편이 낮으면 아내 역시 낮다고 하여 부부의 尊卑는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③ 親迎에 나타난 奢侈排除와 儉素의 혼례관은 사치 보다는 자신의 형편에 맞는 검소한 혼례식을 치루어야 함을 지적한 바다. 오늘날 여러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虛禮虛飾이 근절된 혼례식 모델을 제시하는 전전한 혼례문화 정착의 움직임이 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치를 배제하고 검소함을 위주로 하여 두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던 혼례식의 진정한 意義에 대한 教育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婦見舅姑는 혼례식을 행한 뒤 신부가 시부모님과 시가의 여러 尊長들을 뵙는 禮로써 이와 관련된 혼례관은 精誠과 삼가조심, 孝親, 位階와 序次, 奢侈排除와 儉素로 나타났다. 즉 혼례를 통해 며느리라는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신부는 시부모님을 精誠과 愛敬의 孝로 奉養하게 되며, 시부모는 신부에게 禮를 편으로써 婦道를 새롭게 이루고 親을 두텁게 하여 앞으로 代를 이어 안주인이 될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見舅姑時 마련하는 賽 혹은 幣는 그 多少보다 그것에 담겨있는 精誠의 중요성이 강하게 지적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婦見舅姑의 意味를 再考하게 된다. 혼히 우리가 ‘幣帛드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신부가 시부모님께 드리는 賽나 幣를 지칭하는 것일 뿐 ‘見舅姑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그러나 見舅姑가 시부모님을 뵙는 禮라는 것을 모른채 신랑과 신부가 함께 절을 하

는 변형된 행태가 慣行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몽이 요구된다.

6) 廟見은 신부가 媳家의 돌아가신 祖上을 뵙는 禮로 이에 관련된 혼례관은 精誠과 삼가조심, 祖上崇拜, 奢侈排除와 儉素로 나타났다. 이에 신부는 祠堂에 謁見하고 삼가 謹敬으로 준비한 董 혹은 芹, 栗, 殿을 올리도록 하였다. 사실상 祠堂은 우리의 현대식 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공간이다. 그러나 종교에 관계없이 대개의 家庭들이 祖上이 돌아가신 날을 기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리에서 며느리가 비록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恭敬과 精誠이 담긴 禮의 마음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7) 墓見婦之父母는 신랑이 신부의 부모, 친속들 그리고 조상을 뵙는 것으로 이에 관련된 혼례관은 精誠과 삼가조심, 祖上崇拜, 孝親, 位階와 序次, 奢侈排除와 儉素로 나타났다. 즉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게 되면 자식의 도리로 餐나 食를 가지고 신부의 부모님을 親愛로서 恭敬하며 신부의 친속들과는 상견하였다. 그런 뒤에 신부의 아버지가 사위를 祠堂으로 데리고 가 謁見하였다. 이로보아 신랑의 見婦之父母의 禮는 신부가 見舅姑와 廟見의 禮를 행하는 것과 대등한 혼례절차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몇몇 연구자들이 혼례를 논의함에 있어 墓見婦之父母의

절차는 간과한채 여성을 불평등한 위치에 서있는 사람으로서만 조명하는 오류를 범해왔다. 그러나 삼가愛敬으로 신부집을 찾아뵙도록 했던 墓見婦之父母의 禮를 詳考한다면 우리의 혼례문화 속에 내재한 남녀동등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환이 될 것이다.

III. 결 론

家禮書를 고찰하여 밝혀진 혼례관을 토대로 앞으로의 혼례관 교육에 적용하여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면 <表 4>와 같다. 앞서 제시한 <表 3>을 보면 본 논문에서 설정한 7가지의 혼례관 중 奢侈排除와 儉素, 精誠과 삼가 조심, 祖上崇拜, 位階와 序次, 孝親, 夫婦의 道, 修身의 순으로 혼례절차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길표 외 2인(1997)의 여대생의 혼인준비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家計運營, 孝親, 奉祭祀, 夫婦의 道 등이 실천적 혼인준비교육의 내용으로서 時·空을 초월하여 繼承·發展되어야 하는 가르침으로 밝혀진 것과 맥락을 같아하는 바이다.

앞으로 婚姻準備와 家庭經營에 대한 價值觀 教育의 일환으로서 혼례관 교육은 보다 體系的으로 구성되고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혼례관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表 3> 혼례절차에 따른 혼례관

혼례관	議昏	納采	納幣	親迎	婦見舅姑	廟見	墓見婦之父母	합계
修身	*							1
精誠과 삼가조심		*	*		*	*	*	5
祖上崇拜		*		*		*	*	4
夫婦의 道	*			*				2
孝親				*	*		*	3
位階와 序次		*		*	*		*	4
奢侈排除 와 儉素	*	*	*	*	*	*	*	7
합계	3	4	2	5	4	3	5	

〈表 4〉 家禮書를 토대로한 혼례관 교육내용 예시

혼례관 교육영역	혼례관 교육 내용
1. 奢侈排除와 儉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혼례절차 상에서 奢侈를 금한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儉素하게 행한다. 혼례시 마련되는 모든 물품에 있어 그 多少 보다는 그것에 담겨있는 정성과 신의의 뜻을 중시한다.
2. 精誠과 삼가 조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례의 각 절차를 精誠으로 준비한다. 혼례는 정중하고 바르게 이해함에 의미를 둔다.
3. 祖上崇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례의 기쁜 일에 祖上을 생각하고 감사한다. 조상께 謹敬의 마음과 태도를 다한다.
4. 位階와 序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내에서 位階와 序次를 바르게 알도록 한다. 혼례를 행함에 있어 집안의 웃어른으로서의 혹은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옮기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禮를 갖추어 드려야 하는 혹은 禮를 갖추어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 그에 맞는 구실을 다한다.
5. 孝親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행한다. 혼례를 통해 며느리가 되는 신부는 남편의 부모님을 精誠과 愛敬으로 奉養 한다. 사위가 되는 신랑은 아내의 부모님을 親愛로써 恭敬한다.
6. 夫婦의 道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은 恭敬으로 아내를 인솔한다. 아내도 역시 恭敬으로 남편의 뜻에 和合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도록 한다.
7. 修身	<ul style="list-style-type: none"> 家庭教育 하에 혼인당사자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혼인에 修身보다 富貴와 貧賤을 논하는 것은 삼가한다.

자 시도된 본 연구는 초기단계에 서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 본 논문의 고찰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혼례관 교육에 관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례관 교육의 내용은 먼저 혼례에 대한 바른 價值觀을 定立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혼례의 절차나 형식은 변화한다 할지라도 혼례에 내재되어 있어야 할 진정한 의미나 의의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혼례관에 대한 교육자료는 먼저 혼례에 대한 歷史的인 文獻을 考察하고 再照明하는 노력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경험하에 오늘이 존속함을 상기해볼때 과거의 것이라고 하여 도외시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그에 대

한 이해와 인식을 넓힘으로써 精神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혼례관 교육은 그 대상과 방법에 있어 혼인 적령기에 있는 남녀는 물론 혼례의 주관자로서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成人教育·社會教育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 예절에 관련된 강의 가운데 혼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이길표 외 5인, 1998; 446)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혼례관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한 家禮書 이외에도 보다 많은 문헌들에 대한 고찰연구와 그를 바탕으로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이 시대에 필요한 더 나은 혼례관 교육내용이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家禮」

「家禮輯覽」

「四禮便覽」

「禮記」

배용광(1984). 동서양 규범문화의 변화,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병숙 외(1997). “혼례관행에 관한 의식조사”, 「오늘의 혼례문화 그 진단과 방향모색」,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손승영(1996). “혼례문화의 상업화와 가부장적 특성”, 「가족과 혼인문화」, 한국가족학회.

손홍숙(1998). “조선시대 규범류를 통해본 가정복지 의식과 실천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길표(1995). “혼수의 변화”, 「생활문화연구」제 9집,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이길표·주영애(1989). “가정경영관과 혼례행례와의 관계연구”, 「성신연구논문」제 29집, 성신여자대학교.

이길표·최배영(1997). “조선후기 규범서에 나타난 여성의 혼인준비교육”, 「성신연구논문」제 35집, 성신여자대학교.

이길표·최배영(1998). “주자‘가례’와 그에 나타난 혼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3호.

이길표 외 2인(1993).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가사관과 오늘날의 가사분담 및 가사작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생활문화연구」제 7집,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이길표 외 2인(1997). “여대생의 혼인준비의식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제 11집,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이길표 외 5인(1998). “사회교육으로서의 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성신연구논문」제 36집, 성신여자대학교.

이영미(1989).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우·김명나(1997). “도시주부의 혼례행동 및 혼례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 1권 2호.